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68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개의 R&D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앵커 시설로 양재 R&D 혁신허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 나. 최근 양재 R&D 혁신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민간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업명 :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20.7.~2023.6.)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모집)
- 소요예산 : 915백만원(2020년 예산)
- 주요 위탁사무
 - 양재 R&D 혁신허브 내 입주기업 모집
 - AI 컬리지 운영을 통한 AI 전문인재 양성
 - 컨설팅, 투자연계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
 -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통한 기업·인재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혁신허브 시설 관리·운영(유지보수, 시설대여, 청소용역 등)

나. 대상시설

- 회경재단 빌딩 D·E·F동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8길 39
 - 임차면적 : 지하 1층~지상 4층 , 5,119 m^2
- 송암빌딩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 임차면적 : 2층, 2,427 m^2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허브에 AI(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양재 R&D 혁신허브 추가공간 조성

- 전세계적으로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가 간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과 핵심인재 양성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음.¹⁾
-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 경쟁력 미흡으로 주요 국가인 미국·일본·중국에 뒤처지고 있으며,²⁾ 특히 AI 관련 국내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 2.2년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³⁾

1)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AI산업에 26조원을 투자하고, 미국은 정부주도로 AI연구에 장기투자해 원천 기술 개발 후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정부주도하에 항저우, 베이징 등에 5년간 2조 3천억원을 투입해 AI클러스터를 조성 중임.

2)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2018.5.2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면,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으로 나타났고, 5년 후에도 블록체인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열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6.15.). 4차 산업혁명과 SW R&D 정책보고서.

○ 이에 서울시는 양재 일대의 지역적 강점과 역량⁴⁾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공간 확충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 관련 산업의 R&D 혁신을 촉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300만^m² 부지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양재 R&D 지구〉



○ 양재 R&D 혁신허브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2월에 조성하였고, 현재 한국교총회관과 하이브랜드빌딩 2개 층에 사무공간(50개)을 확보해 입주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음.⁵⁾

4) 서울시 “양재 R&D 캠퍼스 비용 수익 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2019. 7)에 따르면, 전국 AI관련 업체 35,766개 중 19,925개(55.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양재2동 주변에는 5,271개가 밀집해 있음.

5) 한국교총회관 6층 추가공간과, 하이브랜드빌딩, 회경빌딩(B, C동), 품질시험소 별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87회 임시회(2019.6.28)에서 통과된 바 있음.

〈양재 혁신허브 시설현황〉

현 위탁시설	면 적(㎡)	입주기업 수	비 고
- 한국교총회관 4개층(1,5,6,8층)	2,900	30개 기업	기존 위탁시설
- 한국교총회관 6층	500		
- 하이브랜드 빌딩 12·13층	2,958	20개 기업	‘19.6.28.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완료
- 희경빌딩 B·C동	3,743	15개 기업 예정	
-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1,423	10개 기업 예정	

- 현재는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위·수탁협약 (2017.8.1~2020.6.30)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 기업 선발과 지원,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 하고 있음.

- 올해 양재 R&D 혁신지구 사업비는 78억 7,548만원이며, 민간 위탁금 22억 4,434만원, 임차료 16억 161만원, 시설비 33억 9,812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도 예산은 152억 9,912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바, 이는 양재 R&D 공간에 대한 입주기업의 수요(모집경쟁률 5대1)가 높고, 추가적인 공간확보(품질관리소 별관과 양곡도매시장 부지 신축)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여 인근 민간건물(희경빌딩 D·E·F동, 송암 빌딩 2층)을 임차해 입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기 때문임.

〈혁신허브 추가공간 시설물 현황〉

희경빌딩 배치도	희경빌딩 D·E동
 <p> ◦소 재 지 : 서초구 매현로 8길 39 ◦임차면적 : A동을 제외한 모든 빌딩 임차 </p>	 <p> ◦소 재 지 : 서초구 매현로 8길 39 ◦임차면적 : 3,324㎡(지하1층~지상4층, 전층) ◦입주예정 : 2021년 3월 </p>
희경빌딩 F동	송암빌딩
 <p> ◦소 재 지 : 서초구 매현로 8길 39 ◦임차면적 : 1,795㎡(지하1층~지상4층, 전층) ◦입주예정 : 2020년 6월 </p>	 <p> ◦소 재 지 : 서초구 영곡동 300-4 ◦임차면적 : 2,427㎡(지상2층) ◦입주예정 : 2020년 7월 </p>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이번 동의안은 민간 건물의 추가 임차에 따라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 위탁사무는 ▶ 입주기업 모집, ▶ AI 전문인재 양성, ▶ AI 특화 기업 성장지원, ▶ 혁신허브시설 관리·운영 등과 같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과 최신 트렌드 반영을 위해서는 R&D 기업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 처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판단됨.
- 다만, 각각의 혁신허브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분산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협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현재의 수탁기관(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2017.8 ~2020.6)이 2020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추가 임차공간의 개보수 공사 완료와 신규기업 입주 시기에 맞춰 운영 기관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임.
-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공유재산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므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 이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은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 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류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⁶⁾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집행부가 자체 수립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존 위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 시의회 동의 대상

- 동의 대상 :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예산안 의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시행규칙 §2②)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 시행규칙 §2②

예산편성(주관부서)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